제90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안 (조달청)	1.안전관리물자 납품검사, 품질점검(치명결함), 유해물질 검사에 따른 거래정지기간 가중 (강화) o ①안전관리물자의 납품검사 불합격 시(제14조의2②), ②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시(제17조④), ③유해물질 검출시(제17조의4①)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거래정지(또는 배정중지) 기간을 0.5배 ~ 1배 이내 가중 o 계약상대자의 사후조치 의무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등 연장 ▶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2,제17조 제17조의4	1.비중요
2	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(신설) o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신용협동조합 중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조합에 대해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,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위탁해야하는 지역조합의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함 ▶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이행강제금 부과기준(신설) o 「어장관리법」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 마련 – 어장청소 미이행으로 어장청소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명령을 미이행 한 자에 면허면적 0.1ha당 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(1회 부과 한도는 250만원) ▶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	1.비중요
4	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동기FM방송 및 RDS2 기술기준 정의(강화) o FM동기방송 및 RDS2(Radio Data System 2)의 정의 신설(제3조제1항) 및 초단파(FM)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(제7조제1항, 제2항) ▶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 제1항, 제7조 제1항, 제2항	1.비중요
5	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 확대(강화) o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4개 품목 및 1개 종류* 추가 * 품목 : 녹두(건조), 고사리(냉동, 건조), 당근(냉동, 건조), 대파(건조, 냉동) * 종류(같은 품목이나 냉동·건조·파쇄 등 형태가 다른 것) : 양파(냉동) ▶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저메탄사료 정의 및 기준, 표시사항 신설(신설) o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, 보조사료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 o 저메탄사료는 ▲ ‘메탄저감제’를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량(용법)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, ▲ ‘메탄저감제’를 포함하지 않더라도, 사육기간 단축 등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 o 메탄저감제 및 저메탄사료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료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해야할 사항 규정 ▶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,별표15	1.비중요
7	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(강화) o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 150종*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입 · 반입 관리 * 포유류 9종, 조류 6종, 어류 13종, 양서류 13종, 파충류 4종, 연체동물 18종, 절지동물 9종, 곤충 41종, 거미 6종, 식물 31종 o 1종(열대불개미) 지정해제 (생태계교란 생물로 격상) ▶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(강화) o 열대불개미(1종)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 · 반입 · 사육 및 방출 · 유기 등 금지 ▶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제2조	1.비중요
9	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방사선투과검사 장비 안전관련품목 임의 해제 · 훼손 금지(강화) o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기술기준 명확화 – 작업현장에서 투과검사 장비의 안전장치 임의 해제 및 훼손 행위가 빈발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금지 명시 ▶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2.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(신설) o 대형방사선발생장치 고유 기술기준 신설 –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①운영관리에 대한 기준, ②비상안전장치에 대한 기준, ③방사선감시장치에 대한 기준, ④배출시설에 대한 기준, ⑤방사선폐기물 보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함 ▶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6,제63조의7,제63조의8,제63조의9,제63조의10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유전자검사기관 인력기준 강화(강화) ㅇ 비의료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양,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, 검사담당자와 결과분석 전달 담당자, 그리고 검사담당자와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 ▶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2.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(신설)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배아, 난자,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유전자치료기관과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행정처분의 기준 구체화 * 유전자치료기관이 제47조 제5항 위반하여 배아, 난자, 정자, 태아 대상 유전자치료 시행한 경우 : 1차 위반(업무정지 1개월), 2차 위반(업무정지 3개월), 3차 이상 위반(업무정지 6개월) * 유전자검사기관이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: 1차 위반(경고), 2차 위반(업무정지 1개월), 3차 이상 위반(업무정지 3개월)) ▶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에 대한 조치(신설) ㅇ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해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세부 방법 마련 ▶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6	1.비중요
12	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(여성가족부)	1.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조정(강화)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신설하고, 유형별 시설 설치기준 정비 ▶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2.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변경(강화)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에 따라 유형별 종사자 배치 기준 조정 ▶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13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정(강화) ㅇ 24개 물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(별표 2, 3, 6) - (마약) 에타젠 등 4개 물질(별표 2) ※ 국제연합(UN)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4개 물질 - (향정신성의약품) 4-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20개 물질(별표 3, 6) ※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'4-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' 등 16개 물질 및 국제연합(UN)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'클로나졸람' 등 4개 물질 ▶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,3,6	1.비중요